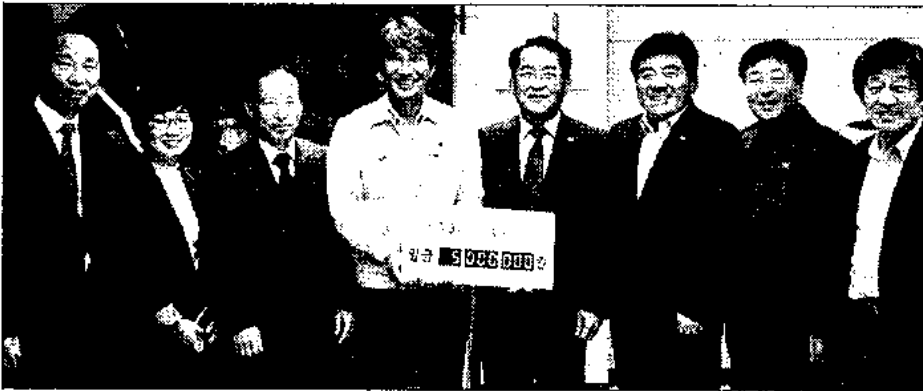


—• 동 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5일 오후 2시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15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한다.



**건설협 도회 영월군에 장학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4일 오전 박선규 영월군수를 방문해 영월장학회의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 【 2015.10.15(목) 건설경제 】

### 건협, 오늘 '2015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 포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5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건설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2015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건설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16일까지 이어진다.

최삼규 건협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회장 및 대의원 등 건설사 대표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건설단체장, 건설관련 연구기관장, 정부 인사 등 250여명이 이번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 연사로는 정성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 △정기국회 주요 이슈 △건설산업 주요 정책 추진방향 △기업의 윤리경영 등을 주제로 성숙기 한국경제에 걸맞은 건설산업의 역할을 제시한다.

최삼규 건협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환기 한국경제에 있어 우리 건설산업이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 하반기 평균 0.8%p 오른다

### 해수부, 346개 항목 공고... '사석 투하' 등 상승

하반기 항만 공사의 건설단가가 상반기보다 평균 0.8%포인트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할 346개 항목에 대한 올해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를 15일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정할 때 직전 반기 동안 수행한 공공·민간 건설공사의 계약·입찰·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기존의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올해 3월부터 항만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분석 대상 공사 건수가 적어 물가상승분만 반영했고 표준시장단가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8%포인트 오른 표준시장단가는 공고 시점인 15일 이후 발주한 300억원 이상 항만·어항공사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지방청·지자체·항만공사 등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계약·체결된 공사 19건을 조사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했다. 항만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 공사가 적어서 대상 공사 범

위를 10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새 단가를 적용하면 '블록 거치(5t 미만)'는 4만7373원에서 4만7084원으로 낮아지지만 '사석 투하(굴삭기 무한궤도 1.0㎡)'는 1878원에서 1961원으로 오른다. 블록 거치는 물가변동 반영으로 하락한 반면 사석 투하는 시공단가 반영으로 상승했다.

346개 항목 가운데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308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단가 16건, 시공단가 8건, 품셈 대비 적정성 반영 14건 등이다. 특히 물가·계약·시공단가를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중 품셈단가보다 75% 낮으면 산술 평균해 단가를 현실화하는 보정작업을 거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계약·시공단가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보정작업을 거친 덕분에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때보다 건설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확대·경영평가위 상설화

## 지배구조 변화조짐... 임직원·조합원 촉각

### 운영위원, 조합원 2명·전문가 3명 등 5명 늘어

건설공제조합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25명에서 앞으로 크게 늘어나고, 9명으로 구성된 조합 경영평가위원회가 상설 자문기구로 신설된다.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견제 장치로 풀이되지만 이런 변화가 조합과 조합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직제상 수장인 이사장이 있고 임원 5명 이내 이사회, 직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의원 200명으로 구성된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익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절반 정도 포함돼 운영된다.

이런 지배구조에 일부 변화가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정관 변경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위원을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늘어나는 5명은 조합원 2명, 전문가 3명으로 채운다.

운영위원이 늘어나는 만큼 경영 의사결정 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고, 특히 전문가들은 의사결정시 공익적 판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도 상설 경영평가위원회(경영위)가 구성돼 운영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됐던 경영진단추진위원회의 경영 개선방안 계획에 대한 실행 점검과 조직역량 점검,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상설 경영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조합원 출신 운영위원들의 판단이다.

9명으로 구성된 경영위는 운영위의 상설 자문기구로서 조합 주요 경영부문에 관한 평가, 임원 연봉 책정 등을 논의한다.

조합은 지난해 내부 임원이 전무로 사상 처음 승진한 이후 조합원의 금융 편의를 위해 적잖은 경영개선을 이룬 만큼 이 같은 위원회 신설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후 올해 최대 배당을 실시하고 보증 수수료와 공제요율을 낮추는 등 경영개선을 이뤘다”면서 “이사회가 있는데도 상설 경영평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 출신 운영위원들은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고 고객중심 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해선 경영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지금껏 내놓은 경영 개선방안이 혁신적이지 않은데다 조합원 경영여건 악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영위 신설은 또한 의무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경영 견제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전날 운영위를 거쳐 박승준 전 골든키자산운용 부회장을 새 이사장으로 추천했는데 조합 직원과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력이나 전문성, 도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자산 5조원대의 조합 이사장을 맡기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정호기자 won@

## 아하! 그렇구나

###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3)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야 한다.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의미이다.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52238 판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계약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다40353 판결 참조).

이러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은 그 조항만 무효로 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없다. 즉,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분만 일부 무효로 되는 것이다. 일부 조항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조항이 없는 계약만 남게 된다. 예컨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로 된다면, 당사자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준계약서의 일반조건에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두고 특수조건에서 설계변

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부인하는 특약을 강요당하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거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계약과 관련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계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